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1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9. 5. 1

다. 상 정·의 결 일 자 : 2009. 5. 13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주민생활과장의 보직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인 점과 현보직자가 지방서기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 서열을 재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생활과를 기획감사실 다음 행정과 앞에 둠(안 제3조 제1항)

나. 주민생활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두고 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이하생략)을 각각 순서대로 함.(안 제3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생략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어 주민생활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생활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두도록 하므로서 실·과별 서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 없음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5.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